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34

제출년월일 : 2000. 1. 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양곡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양곡가공업의 시설 양도·임대·변경 또는 영업폐지·휴업신고 조항이 삭제('99.7.22)됨에 따라 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를 상위법에 의거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○ 시설의 양도·임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삭제(안 제4조)
○ 제분업의 폐지·휴업신고 사항 삭제(안 제5조)
○ 별지 4호서식 내지 별지 7호서식 삭제

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해당없음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○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○ 입법예고 : 해당없음
○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조례 제　　호

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"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.

부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 안	개 정 안
제4조(시설의 양도·임대 또는 변경신고)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의 신고를 한자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양도·임대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1. 이설·증설·개설 또는 축소의 경우 가.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. 삭제 다. 삭제 2. 합설의 경우 가. 합설이유서 나. 합설동의서 다. 인감증명서 라. 동력 및 기계시설내역표(별지제2호서식) 3. 명의변경(양도·임대)의 경우 가. 양도·임대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(양도·임대의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) 나. 구 신고필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그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갱신 교부하여야 한다.	제4조 <삭제>
제5조(제분업의 폐지·휴업신고)①제분업의 신고를 한자가 제분업을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폐지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②제분업 신고를 한자가 휴업을 한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휴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및 휴업신고를 받은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	제5조 <삭제>

현 행 안	개 정 안
〔별지 제4호서식〕 규모이하제분업(양도·임대·변경)신고서	<삭 제>
〔별지 제5호서식〕 규모이하제분업 폐지신고서	<삭 제>
〔별지 제6호서식〕 규모이하제분업 휴업신고서	<삭 제>
〔별지 제7호서식〕 규모이하제분업(폐지·휴업)처분통지서	<삭 제>